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봉양순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86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발 의 자 : 봉양순 의원 (1명)
찬 성 자 : 이광호, 이영실, 이승미,
김화숙, 김경영, 이은주,
송아량, 이병도, 김용연,
오현정, 김상훈, 김소양,
김혜련 의원 (13명)

1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기금은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, 조례에서 이를 “출연금”으로 명시하고 있어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5조·제6조·제8조·제9조의 1호1항 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”을 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”으로 변경
- 출 연 금 :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
 - 기금전출금 :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, 제6조제1항제1호,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“출연금”을 “기금전출금”으로 변경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노인복지계정)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<u>출연금</u></p>	<p>제5조(노인복지계정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기금전출금</u></p>
<p>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<u>출연금</u></p>	<p>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기금전출금</u></p>
<p>제8조(자활계정)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<u>출연금</u></p>	<p>제8조(자활계정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기금전출금</u></p>
<p>제9조(주거지원계정) ① 주거지원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<u>출연금</u></p>	<p>제9조(주거지원계정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기금전출금</u></p>